

# 신기술(NT) · 우수품질(EM) 인증제도 안내

## NT 신기술인증(NT마크)

### ■ 신기술인증이란?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

### ■ 관련법령

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

### ■ 인증대상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(또는 제품)으로써 실용화한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 또는 상품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

### ■ 인증유효기간 : 인증일로 부터 3년

## EM 우수품질인증(EM마크)

### ■ 우수품질인증이란?

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국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

### ■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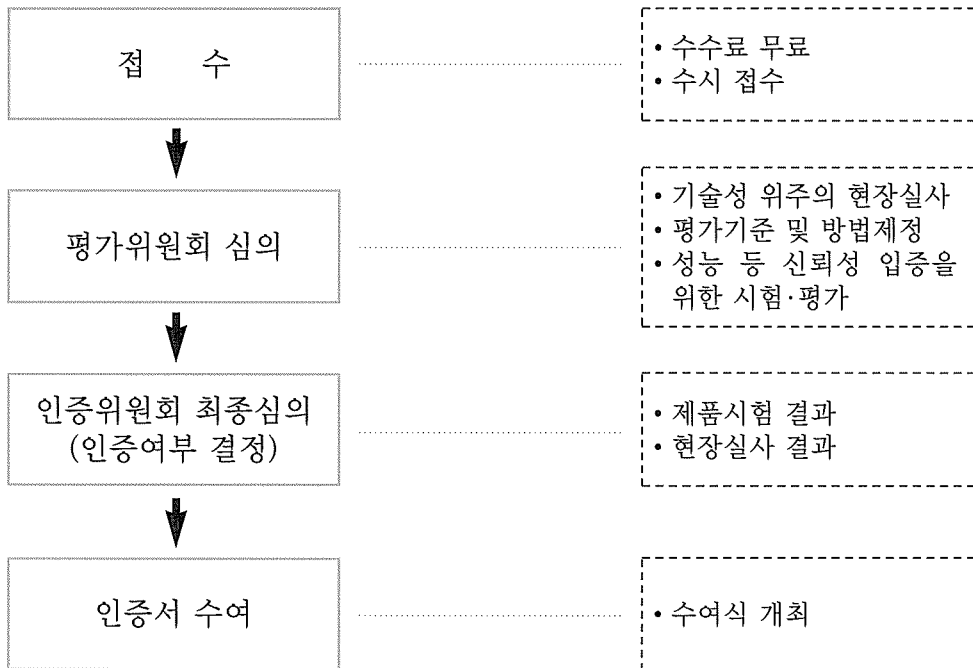
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

### ■ 인증대상

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·부품·소재

### ■ 인증유효기간 : 인증일로 부터 3년

## 인증절차



※신청서 양식 : <http://emnt.ats.go.kr>에서 NT, EM 인증요령을 다운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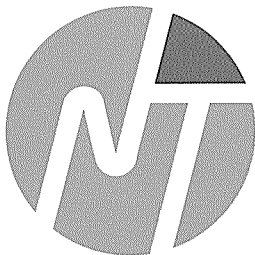
## 정부 지원 시책

-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20%이상 의무구매 제도화  
2005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
- 우선구매 지원  
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를 할 수 있음  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(인증일로부터 2년간)  
- 조달청 “우수제품” 선정 심사시 우대
- 기술우대보증  
기술신용기술평가 보증시 절차간소화 및 보증한도 우대보증  
-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
- 하자보증 등 보증종류 확대  
인증제품에 대한 보증종류 확대적용  
- 입찰보증, 계약보증, 차액보증, 하자보증, 지급보증  
- 일반보증기관의 1/3 수수료  
\* 취급기관 : 기계공제조합
- 산업재산권 우선심사  
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 
- 인증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만 해당
- 판로개척 및 홍보 등  
-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 
- 영문 카다로그 제작 배포  
  • 배포처 : 해외 KOTRA 무역관 및 조달청  
- 기술개발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(가점부여)  
- 개발유공자 및 기업 정부포상

## 인증 마크

### ■ NT마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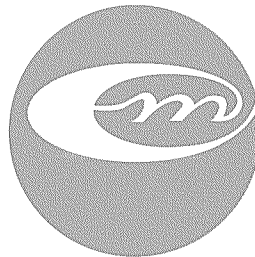
신기술인증요령 「별지 제4호 서식」 참조



[NT : Korea New Technology]

### ■ EM마크

우수품질인증요령 「별지 제4호 서식」 참조



[EM : Excellent Machine, Mechanism, Materials]

※ 인증제도 문의 : NT부분 - 에너지자원표준과 (☎ : 02-509-7277~80), EM부분 - 자본재표준과 (☎ : 02-509-7281~1)